

#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보건의료정책과장 : 천주환 ☎2133-7505 보건정책팀장 : 차동윤 ☎7507 담당 : 이재현 ☎7512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방문진료 수가 제도 개선 건의 (보건의료정책과, '26. 3. 11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외래, 입원 중심 치료에서 재택의료 중심 전환 필요</li><li>○ 방문진료 수요 대비 인프라 부족</li></ul></li><li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(의료기관) 방문진료 수가 수준이 낮아 의료기관 참여 저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방문진료수가는 13만원/회 수준으로 외래 진료 대비 시간·인력 등 비용이 추가 발생하나 수가는 부족</li></ul></li><li>○ (대상자) 방문진료 이용 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이용 기피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본인부담금 30%(3만9천원/회) 발생, 외래진료 1,500원(노인외래정액제)에 비해 높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</li></ul></li></ul></li><li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(의료기관) 현행 1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, 방문진료 가산 수가 도입</li><li>○ (대상자) 현행 본인부담금 30%에서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는 10% 인하</li></ul></li><li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</li></ul></li></ul>	보건복지부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2.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전문의 등록제도 개선 (보건의료정책과, '26.1.14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조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재직의 명단에 포함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하여 등록신청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문의 근무 및 환자 진료 관련 법적·제도적 근거 미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문의 근무조건, 진료주체, 진료과목별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전문의 근무 여부 확인 등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문의 등록제도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추진 건의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</li> </ul>	<p>보건복지부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3.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오작동 시 과태료 부과 건의 (건강관리과, '26.3.4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는 담배 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음</li> <li>- 성인인증장치가 미부착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내 무인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점검 결과, 부착된 일부 성인인증장치에서 복사 및 위조 신분증으로도 성인인증이 가능함 확인했으나,</li> <li>○ 현행법상 성인인증장치 오작동(위조 · 복사 신분증 미판별)으로는 과태료 부과 불가(법률자문, '26.3.4.)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담배자동판매기 통한 담배 구매 시, 구매자 본인 확인 인증 장치 의무화</li> <li>○ 성인인증장치 오작동 시 미부착과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제34조제2항제1호</li> </ul>	<p>보건복지부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4.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권한 확대 건의 (식품정책과, '26. 1. 5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 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생산자 단체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, 농수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·지도·계몽</li> <li>-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지도·홍보·계몽</li> </ul> </li> <li>○ 명예감시원 위촉인: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시도지사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명예감시원 위촉 권한 시·도지사에게만 부여 (시·군·구청장에게는 없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군구 필요 인원 즉시 확보 어려움</li> <li>- 지역 특성에 맞춘 감시망 구축 어려움</li> <li>- 시도 업무부담 증가 및 행정 비효율 초래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권한을 시·군·구청장에게도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속하고 실질적인 감시·지도·계몽 시행</li> <li>-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감시체계 구축</li> <li>- 시도 관리부담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농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04조</li> </ul>	<p>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5. 수입식품 원산지 및 제조일자 표기 확대 건의 (식품정책과, '26. 3. 13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상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정보표시면에 작게 표시되어 있어 가독성이 낮음</li> <li>○ 소비기한만 표시되어 있어 수입식품의 제조일을 알 수 없음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글 포장을 사용한 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려워 국내산 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움</li> <li>○ 식품의 제조일자를 알 수 없어 소비기한이 긴 (최대 6개월) 식품의 생산유통 상태 확인이 어려움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입식품은 원산지를 제품 주표시면(전면)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으로 강조해서 표시하도록 하고, 해당 국가의 언어를 병기하여 수입식품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개정</li> <li>○ 소비기한과 함께 제조일자도 함께 표시하도록 개정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</li> </ul>	<p>식품의약품안전처</p>